

③ 정관

사단법인 동대문그린환경운동본부 정관

2016. 4.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동대문그린환경운동본부"(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자연사랑·생명존중"을 설립이념으로 녹색환경운동의 저변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지원함으로서 국익창출과 평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연보호를 위한 시민 환경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2. 녹색환경실천운동 봉사단 운영 및 홍보와 계몽사업
3.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및 구조와 대책 활동
4. 자연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비용 절감정책 및 기술지원 세미나 개최
5. 자연환경 도서와 홍보지 출판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된다.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며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사회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로서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④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⑥ 회원은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⑦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의 상실)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 한다.

-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毀損)시킨 때
- ②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
-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8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 ③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① 일반회원 회비
- ② 단체회원 회비
- ③ 특별회비

서울특별시

제3장 임원 및 대의원

제10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허수 인(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장의 권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의 권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시는 상근부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재산에 관한 감사
- ②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1명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처리
- ② 직원의 지휘·감독
- ③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대의원의 구성)

-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③ 일반 대의원은 본회 회원 중 30인 이상 80인 이내로 한다.
-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은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⑤ 본회의 직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제26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을 선출한다.

제20조(전문위원)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 자연환경 조사 및 기술연구 분야
 2. 자연환경 활동가 및 실천운동교육 분야
 3. 자연환경 홍보 및 교육, 출판 분야

제21조(명예회장,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 ②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22조(회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전문위원회

제23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일 7일전까지 해당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회의성립과 의결)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및 해산

2. 임원 및 대의원 선임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총회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총회에서 결정한 출석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동의와 회원 확대가입 동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결원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본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 ①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원은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자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 한다.
1. 회비
 2. 기부금, 후원금
 3. 보조금
 4. 사업수입금
 5. 교육수수료 등
 6. 기타
- ③ 본회의 재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④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본회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본회는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6. 4. 28.

발기인(회장)

김충철



발기인

이기영



발기인

이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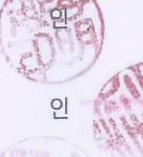
발기인

김우숙



발기인

이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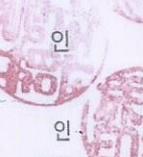
발기인

이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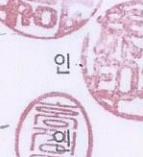
발기인

한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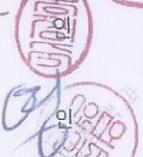
발기인

정재성



발기인

홍정숙



발기인

김민경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